

제2026-66호 2026년 8월 14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도시 기본이 튼튼한 행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세계가 찾는 매력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39호 여수 적량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52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평강건설(주)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295호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96호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97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98호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299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0호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적량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적량동, 중흥동, 월내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8. 14.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변경없음)

구 역 별	위 치	면적(㎡)	비 고
적량동 주변	여수시 적량동 200번지 일원	737,010	-

나. 제한사유(변경없음)

- 본 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다. 제한행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제외대상(변경없음)

- 공공시설로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

마. 제한기간(변경)

- 당초: 2023. 8.17. ~ 2026. 8.16.
- 변경: 2023. 8.17. ~ 2028. 8.16.(증 2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 월 13 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평강건설(주) (김O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로552, 2층 202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여수-22-가-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여수2017-09-03)	206211-0059367	2026. 8. 13.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6. 8. 13. ~ 2026. 8. 27.(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익



여수시 조례 제2295호

붙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을 “용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용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기타, 용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금”을 “용자계정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 ----- <u>각 목의 어느 하나</u>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6.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융자계정-----
3. (현행과 같음)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 략)
2.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차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융자계정-----

② 융자계정 기금-----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

③ (생 략)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2. (생 략) <신 설> 3. 4. (생 략)	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하



여수시 조례 제2296호

붙임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업자에게 을”을 “영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u>휴게음식점영업</u> 또는 <u>제과점영업</u> (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 ----- ----- -----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u>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u>영업자에게</u> 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 ----- <u>영</u> <u>업자에게</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이 재 현



여수시 조례 제2297호

붙임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면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	(5)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	(3)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고약정)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7조(금고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u>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경



여수시 조례 제2298호

붙임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 나. 공무원직 근로자
 - 다. 기간제 근로자
 -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여수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형사고발”을 “고소·고발”로, “소송 등의 법률”을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안전시설 확충)”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
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면담을 포함한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한다.
이 경우 종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한다.

제7조의4(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담당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의 폭언·폭행 여부

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

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

제12조 중 “사항으로”를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u>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u>”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u>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u> 2. <u>공무직 근로자</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u>”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u>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u> 나. <u>공무직 근로자</u> 다. <u>기간제 근로자</u> 라. 「<u>청원경찰법</u>」에 따른 <u>청원경찰</u>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u>특이민원</u>”이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지원

5. · 6. (생략)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제3조(적용범위) ----- 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

-----.

제6조(지원 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4. ----- 고소·고발 -----
--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경우 다음 각 호의 -----
-----.

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안전시설 설치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
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

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
요원 배치

제7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
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
나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시장은 민원담당 공
무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
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면
담을 포함한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한다. 이 경우 종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 한다.

제7조의4(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담당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u>사항으로</u> 규칙으로 정한다.	<u>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u> ④ <u>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u> <u>1. 민원인의 폭언·폭행 여부</u> <u>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u> <u>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u> 제12조(시행규칙) ----- ----- <u>사항은</u> -----.
---	--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영호



여수시 조례 제2299호

붙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여수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시장이 위탁사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u>1. 해당 위탁사무분야 전문가</u> <u>2. 관련 사회단체 등 소속으로 활동 중인 사람</u> <u>3. 여수시의회 의원 2명</u> <u><신설></u> <u>4. 관계 공무원</u> <u>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1.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u> <u>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u> <u>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u>4.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u>6. (현행 제4호와 같음)</u> <u>5. 여수시의회 의원</u>

<u><신 설></u> ④ ~ ⑨ (생 략)	<u>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u> <u>· 공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u> <u>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④ ~ ⑨ (현행과 같음)
--	---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봉



여수시 조례 제2300호

붙임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여수시는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밖의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사업의 발굴 및 선정·신청(안)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역 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협력 유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수시 상행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상행이보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인

2. 습지보전,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해양생물, 어업, 환경,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해양 분야 업무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양보호구역(예정지 포함)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대표, 어촌계 등)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 및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거나, 출석률이 현저히 낮아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위원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위촉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위원회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이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한 안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예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하



여수시 조례 제2301호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예 관한 조례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관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로 한다.

제3조(「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전라남도 예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으로, “전라남도 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정부·도”를 “정부·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국·도비”를 “국비·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비·도비”를 각각 “국비·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6조(「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도비”를 “국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8조(「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남도의회의원”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9조(「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1조(「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전단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전라남도와의 협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리도의 적용범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7조(「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의 개정)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표 1의 입장료 감정의 대상자란 제6호 중 “전라남도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한다.

제20조(「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한다.

제21조(「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2조(「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4조(「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5조(「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6조(「여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7조(「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8조(「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라남도 의회(이하 “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을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의”를 “통합특별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 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제29조(「여수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로 한다.

제30조(「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1조(「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2조(「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3조(「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5조(「여수시 건축 조례」의 개정)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6조(「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7조(「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 ----- <u>전남광주통</u> <u>합특별시장</u> ----- ----- -----.

2.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u>전라남도관리</u>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 ----- ----- ----- <u>전</u> <u>남광주통합특별시</u> <u>관리</u> ----- -----

3.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u>전라남도지사</u> (이하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장</u> (이하 “통합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
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
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
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
보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
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특별시장 이-----.

③ -----

----- 통합특별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통합특별시장-----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합특별시장-----.

③ (현행과 같음)

④ -----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장은 <u>도지사</u>에게 변경사항 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 ----- <u>통합특별시장</u> ----- ----- 1. ~ 3.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u>전라남도 예산</u> 이 지원될 경우 <u>전라남도 내</u>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2. -----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u>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정지원 분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u>전라남도지사와</u>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분담)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u> ----- -----.

5.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부금 등”이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u>전라남도</u> 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u>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 타당성	2. -----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u>조부·도</u> 사업과의 연계성	가. ----- <u>조부·통합특별시</u>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재정협의	4. -----
가. <u>국·도비</u> 의 재원 비율 적정성	가. <u>국비·통합특별시비</u>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여수시가 신청하는 <u>국비·도비</u>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u>국비·도비</u>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3. (생략) ② (생략)	제7조(의회 보고) ① ----- ----- ----- ---. ----- ----- ----- -. 1. ----- <u>국비·통합특별시비</u> ----- ----- ----- ----- 2. ----- ---- <u>국비·통합특별시비</u> -- ----- -----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6.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생략) 2. 정부 및 <u>전라남도</u>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 26. (생략)	제3조(결정사항) ----- -----. 1. (현행과 같음) 2.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3. ~ 26. (현행과 같음)

7.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하되, 1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3.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 용역 4. 5. (생략) ② (생략)	제4조(심의대상)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국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 --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전라남도의회의원</u> 해 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u> <u>회 의원</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9.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 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 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却下) 결정된 경우는 고충민원의 대상 으로 한다. 1. · 2. (생략)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또 는 <u>전라남도지사</u> 의 지시에 따 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 8. (생략)	제8조(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4. ~ 8.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전남광주통</u>

따라 <u>전라남도지사가</u>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u>전라남도지사</u>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u>합특별시장</u>이 -----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10.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u>전라남도</u>,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11.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 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관외자(사망일 현재 <u>전라남도</u>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	제9조(사용자격)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 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 화장시설 사용에 한 정한다. <본호 신설 2016. 4. 2 2., 개정 2019. 10. 14., 2025. 6. 30.>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 장은 <u>전라남도</u>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13.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전라남도와의 협력) 시장 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u>전라남도</u> 와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 한다.	제18조(전라남도와의 협력)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14.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용범위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용범위
아스팔트포장도로	A-A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40cm	국도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포장도로	A-A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40cm	국도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B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30cm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B	표층 5cm 기층 20cm 보조기층 30cm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C	표층 5cm 기층 15~20cm	지선도로		A-C	표층 5cm 기층 15~20cm	지선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C-A	표층 20cm 보조기층 20cm	폭 6m 이상	콘크리트포장도로	C-A	표층 20cm 보조기층 20cm	폭 6m 이상
	C-B	표층 15cm 보조기층 15cm	폭 6m 미만도로		C-B	표층 15cm 보조기층 15cm	폭 6m 미만도로
보도	일반 보도블럭	보도블럭표층 6cm 모래 3cm	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보도	일반 보도블럭	보도블럭표층 6cm 모래 3cm	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 블럭표층 6cm 모래 3cm	"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 블럭표층 6cm 모래 3cm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cm 몰탈 (1:3) 3cm 콘크리트기초 5cm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cm 몰탈 (1:3) 3cm 콘크리트기초 5cm	"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표층 10cm 모래 5cm	"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표층 10cm 모래 5cm	"
	기타	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		기타	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
사리도			전라남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사리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15.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 신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u>전라남도지사</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제8조(등록 신청) ① ----- -----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장</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16.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 7. (생략)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7.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생략) ② 자연휴양림은 <u>전라남도</u> 여수시 돌산읍 대북길 160 일원에 둔다.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18.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u>전라남도</u> 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19.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라 한다)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u>전라남도</u> 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②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② -----

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u>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u>」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u>」----- -----.	
【별표 1】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		【별표 1】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	
구분 (감면범위)	대 상 자	구분 (감면범위)	대 상 자
입장료 면제	1. 여수시 섬주민* * 섬주민의 범위는 [별표2]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5. 75세 이상인 사람 6. 6세 이하 아동 7. 단체인솔자(1인), 여행사 가이드(2인), 기사(1인) 8.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인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면제	1. 여수시 섬주민* * 섬주민의 범위는 [별표2]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5. 75세 이상인 사람 6. 6세 이하 아동 7. 단체인솔자(1인), 여행사 가이드(2인), 기사(1인) 8.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인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감경 (100분의 50범위 내)	1. 여수시민 2.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3. 현역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구 6. 전라남도민(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포함) 7. 자매도시 및 남해안남중권 도시 주민 8.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감경 (100분의 50범위 내)	1. 여수시민 2.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3. 현역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구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전남광주통합시민증 소지자 포함) 7. 자매도시 및 남해안남중권 도시 주민 8.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장료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입장료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0.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 기본법 제8조에 따른 <u>도세</u>와 시세를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u>-----. 2. ~ 5. (현행과 같음)

21.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u>전라남도</u> 의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22.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로부터 여수시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 7. (생략) 8.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가 고시한 <u>전라남도</u>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기준 지역을 말한다. 9. ~ 11.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 2. ~ 7. (현행과 같음) 8.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고시한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9. ~ 11. (현행과 같음)

23.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u>전라남도</u>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u> ----- ----- ----- -----. 2. (현행과 같음)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생략) ② 시는 <u>전라남도</u> 와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보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u>전라남도</u> 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u>별시</u> -----.

24.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생략)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u>도지사</u>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장</u> -----.

25.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u>전라남도지사</u>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26. 여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 ----- -----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u>전라남도</u>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경력보유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27.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u>전라남도</u>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28.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

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와 <u>전라남도</u> (이하 “도 “라 한다)위임사무 중 <u>국회와 전라남도의회</u>(이하 “<u>도의회</u> “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 략) 제12조(<u>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u>) ① 제6조에 따라 국가사무와 <u>도의</u>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지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회나 <u>도의회</u>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이하 “<u>통합특별시</u>” 라 한다) 위임사무중 <u>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u>(이하 “<u>통합특별시의회</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u>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u>) ① ----- <u>통합특별시의</u> ----- ----- ----- ----- ----- ----- ② ----- <u>통합특별시의회</u>----- ----- -----.
--	---

29. 여수시 주차장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 (생 략) ②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제6조(주차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u>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u>」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u>」 제4조----- ----- ----- ----- ----- ----- ----- -----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30.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 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2. (생략) 3. 여수시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u>전라남도</u>에 요구하는 사항 4. (생략)	제4조(지원 기준)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4. (현행과 같음)

31.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u>전라남도</u> 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32.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u>전라남도</u> 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여수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33.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u>전라남도</u>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4.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u>전남광주통</u> <u>합특별시</u> ----- ----- ----- --. 3. 4. (현행과 같음)

34.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u>전라남도</u>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35. 여수시 건축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②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자로서 <u>전라남도</u>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 <u>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③ (현행과 같음)

36.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투자시설비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동 중인 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재난·화재로 인한 피해로 기업 도산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건물 신·개축이나 기계시설의 설치 등 피해	제17조(투자시설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복구에 사용한 지원 자금(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u>전라남도</u>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을 말한다)의 일정부분의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의 이자보전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를 여수시의 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 ---
--	---

37.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u>전라남도의</u>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